

출판부 운영 시행세칙

제정 : 2017. 07. 07.

담당자 : 도서관 (02-950-5450)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인세)	제3조(정가책정)	제4조(교재개발비)
제5조(도서증정)	제6조(재고도서 폐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출판부운영규정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세) ① 본 출판부에서 출판하는 도서의 저작자에게 초판일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세를 지급한다.

1. 학술연구 도서는 총판매가액의 15%
2. 교양과목 교재는 총판매가액의 15%
- ② 중판일 경우에는 전항의 기준율에 5%를 가산한다.
- ③ 시행세칙 6조에 의거 증정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가책정) 출판도서의 정가는 도서의 내용, 소요제작비 및 제작부수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4조(교재개발비) ① 교재내용의 충실성과 저자의 원고집필을 진작시키고 교재발간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도서증정) 출판도서의 증정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판매증진을 위한 경우의 증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저자용(저자 홍보용 포함) 10부
2. 본교 학술정보관 5부

제6조(재고도서 폐기) ① 재고도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며, 판매량이 저조한 도서
2. 개정판 및 증보판의 발행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한 구판 도서
3. 낙장, 파본 등으로 훼손되어 판매할 수 없는 도서
4. 기타 출판부장이 판단하여 폐기 할 필요가 있는 도서
- ② 폐기대상 재고도서에 대하여는 해당 도서의 저자에게 발간 당시 정가에서 할인하여 판매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출판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인세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폐기대상 재고는 저자와 협의한 후, 출판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